

# 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

물품의 구매(제조)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(제조)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.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(이하 “일반조건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1조[목적]

본 계약서의 목적은 병원의 「2023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수술실 의료용 천자기, 천공기 구매 계약」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정하기 위함이다.

## 제2조[계약이행]

계약상대자는 「2023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수술실 의료용 천자기, 천공기 구매 계약」과 관련하여 기한 내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## 제3조[계약물품]

본 계약을 통해 아래의 계약물품 납품을 체결하며, 계약 시 본 문서에 첨부된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 계약물품 조달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.

물품명	수량 및 단위	규격
의료용 천자기, 천공기	1set	규격서 참조

## 제4조[납품 및 설치조건]

- 계약물품은 2023년에 제조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 내에 해당 구성품의 생산이 무기한 중단 또는 단종되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, 동등 또는 상위 모델(규격)로 납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물품을 신품으로 병원이 지정한 곳에 납품 및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수요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납품 일정을 사전 통지하고 일정을 조율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.
-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납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며, 병원 시설물 파손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장비 메뉴얼을 수요 부서에 제공하고, 장비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횡수에 관계 없이 수요부서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할 때까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5조[지체상금]

- 지정된 날짜까지 납품되지 않을 경우, 병원의 계약금액에 지체 1일당 지체상금률(1일 1천분의 0.75)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한다.

2. 납품, 설치, 시운전 완료 후 병원은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실시한다.
3. 천재지변, 전쟁, 감염병 확산 등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없는 사유로서,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병원의 사정에 따른 지체는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.

### 제6조 [대금의 지급]

1. 대금 청구는 검사검수 완료 후에 하며 대가의 지급은 병원의 통상적인 지급일을 준용한다. 단,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할 경우 대금지급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.
2. 계약상대자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5(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) [별표 제2의3] “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” 제5호 “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” 에 의거하여 아래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 요청할 수 있으며, 계약 시 본 문서에 첨부된 대금지급요청서를 관련 문서로 제출한다.
  - 1개월 이내 : 1.8%, 2개월 이내 : 1.2%, 3개월 이내 : 0.6%

### 제7조 [하자보수 및 사후관리]

1.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, 설치 완료 이후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**하자보증기간인 3년 이상**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(이하 "A/S" 라 한다) 하여야 한다.
2. 계약상대자는 병원으로부터 A/S 요청을 받은 경우 A/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/S를 완료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3.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 전체를 신품으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4.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(물품의 내용연수)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(물품의 내용연수)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 [채권채무의 양도금지]

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채권, 채무에 대하여 타인(제3자)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.

### 제9조 [계약의 변경]

본 계약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나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10조 [계약의 해지]

계약담당 직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자동적으로 병원에 귀속된다.

1. 계약서상의 납품기한(또는 연장된 납품기한)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
2.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

인정될 경우

3.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
4.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품의 의사가 없는 경우

#### 제11조 [지식재산권]

본 계약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거나 병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「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」 제29조의2(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)에 의거하여 병원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12조 [관할법원]

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법원은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#### 제13조 [어구의 해석]

계약과 관계된 어구해석에 대하여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른다.

#### 제14조 [기타사항]

1.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에 따르되, 이견이 있을 경우 병원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2. 본 입찰에 사용된 물품구매(제조)계약특수조건과 입찰공고문, 규격서, 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.
3.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.
4. 물품구매(제조)계약특수조건은 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한다.

제15조 [부칙] 본 계약서는 날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
# 물품공급확약서

- 공 고 번 호 : 23-8
- 수 요 기 관 :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
- 공 고 명 : 2023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수술실 의료용 천자기, 천공기 구매 계약
- 제 조 사 :  
(제조사로부터 공급 위임받은 총판업체 또는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업체)
- 납 품 사 :  
(입찰자 또는 계약자) ※제조사와 납품사는 같을 수 있음
- 공급규격 및 수량: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및 수량
- 납 품 업 체 명 : (주)
- 사업자등록번호: - -
- 납 품 기 한 : 계약시작일로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

당사는 위 (제23-8호) 2023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수술실 의료용 천자기, 천공기 구매 계약 입찰과 관련 계약물품의 제조, 수입 등 총판업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에 동 물품(모델)을 납품업체(업체명)를 통하여 납품기한 내에 공급함은 물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제 조 사 명 : (직인날인)  
사업자등록번호:  
본 사 주 소 :  
연 락 처 :  
대 표 이 사 : (인)

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귀하

# 대금 지급 요청서

- 계약건명 : 2023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수술실 의료용 천자기, 천공기 구매 계약
- 계약금액 : 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 (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, VAT포함
- 계약일자 :
- 지급처

구 분	내 용
업 체 명	
사업자등록번호	
계좌번호	

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(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)에 의거하여 대금은 장비 납품일로부터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개월 이내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  .   .

업체명

(인)

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귀하

**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(제16조의5 관련)**

허용 행위	허용 범위
<p>5.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</p>	<p>○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: 거래금액의 0.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</li> <li>2.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: 거래금액의 1.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</li> <li>3.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(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): 거래금액의 1.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</li> </ol> <p>※ "거래가 있는 날"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.</p> <p>※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.</p>